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1.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9. 5. 3.
-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5. 14.)

상정, 심사, 보류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9. 5. 15.)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체 업무 전담직원 채용을 명시하여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 규정(안 제1조~제2조)
- 2) 각 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내용 변경(안 제3조~제7조)
- 3)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급직원 채용과 업무 명시(안 제13조)
- 4)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제16조)

3. 검토보고 (최종의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보완·규정하여, 각종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협의체 전담 직원 채용을 통하여 민간 및 공공, 협의체 간 조정·중재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또한, 안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에서 안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까지는 각종 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표 1> 같이 보완 규정하였음.

〈표 1〉 개정조례안 제4조~제7조 주요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대 표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위원정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선정 : 당연직, 위촉직 -기타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	공동위원장 (구청장, 위촉대표)
제5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원정수 :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선정 : 당연직, 위촉직 -기타사항 : 분야별 실무분과 구성가능	위원장 (위원장대표)
제6조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위원정수 : 30명 이하로 구성(분야별) -위원선정 : 지역사회보장 분야 종사자	분과장 (위원장대표)
제7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원정수 : 동별로 10명 이상 -위원선정 :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 -기타사항 : 운영경비 예산 지원 가능	공동위원장 (동장, 위원대표)

- 아울러, 안 제13조(직원)에서는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위한 유급직원 채용의 근거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 마포구와 중랑구 2개구를 제외한 23개구가 있으며, 2019.3.31. 현재 5개구만 직원이 미채용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유급직원 조례유무 및 채용 현황

(단위: 2019.3.31.현재)			
구분	조례	직원채용	비고
시 행	23개구	20개구	채용예정 7개구 포함(마포구 등)
미시행	2개구 (마포구, 중랑구)	5개구 (종로, 중구, 용산, 노원, 마포)	근거조례 없음 (2개구)

- 이어서, 동 개정안 제14조(회의)부터 제16조의 경우는 각 협의체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소집 조건과 심의안건을 개최 5일전 까지 서면으로 알리는 것과 회의록 작성과 의결사항의 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아래 <표 3> 의 협의체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현황과 <표 4> 의 비교에서 3년간의 연평균 100회 이상의 회의개최 실적 대비 연 16회 이상의 기준은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표 3> 마포구 각 협의체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현황(3년간)

(단위: 회)					
년도별	구분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2018		150	3	10	95
2017		167	4	11	115
2016		134	7	13	82
					32

<표 4> 개정 전 · 후 조례안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12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 <p>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4. 종합의견

-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유급직원을 두는 등,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 없음